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 선고 2018가단508287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A

변론종결 2020. 3. 27.

판결선고 2020. 5. 1.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주위적으로, 2017. 11. 22. 체결된 금전증여계약을, 예비적으로, 2017. 8. 30. 체결된 양육비지급계약을 '30,454,942원 및 그 중 30,454,875원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454,942원 및 그 중 30,454,875원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는 2017. 9. 7.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72,000,000원에 매각하였고, 2017. 11. 22. 매매대금 중 69,546,050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B는 채무초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69,546,050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예비적으로, B가 2017. 8. 30. 협의이혼에 의한 양육비지급계약에 따라 위 69,546,050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 양육비지급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구상금채권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여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7. 11. 22. 당시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그로부터 4~5개월 후인 2018. 3. 6.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갑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E은행, F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소극재산으로는 E은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채무 165,000,000원, 국세청 체납금 88,871,310원, G회사 채무 8,924,000원, H회사 대출 11,217,000원, F은행 대출 29,000,000원, E은행 대출 54,000,000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B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자녀양육비 170,000,000원 중의 일부로 69,546,050원을 지급받았을 뿐 사해의사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피담보대출금 165,290,490원을 변제하고 국세청에 90,806,790원을 납부하면 잔액이 115,902,720원에 불과한데, 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피고는 B와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이혼하면서 14살, 12살, 8살의 3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한 170,000,000원 중 50%에 상당한 85,000,000원(=170,000,000원×50%)은 양육비로서 상당한 범위에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가 B로부터 증여받은 69,546,050원은 위 양육비 상당 금액에 아직 미치지 못하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B가 2017. 8. 30. 협의이혼에 기한 양육비지급계약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69,546,050원을 지급하였더라도(위 양육비지급계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은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석

별지